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단54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무림, 조재현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8. 10. 18. 접수 제10194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시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그 보증에 기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연장된 기한)	신용보증원금	대출은행
D	2016. 6. 20.	2017.6.20. (2019.6.20.)	85,000,000	중소기업은행 원천동 지점
E	2017. 6. 22.	2018.6.22. (2019.6.21.)	540,000,000	중소기업은행 원천동 지점

나.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 또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연대입보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투명경영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 약정인은 보증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으로 입보하지 않으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같은 조 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2조(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제5조에서 정한 기보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와 사용금지
5. 경영에서 탈퇴 또는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1/2 이상을 처분시 기보의 동의
6. 제7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 준수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5조(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와 사용금지) ① 약정인과 보증의뢰인은 ‘별지1’과 같이 제1조에 의한 보증서 담보대출금의 집행(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보증서 담보대출을 부동산투자, 주식매입 등 제1항의 자금집행(사용) 계획과 달리 집행(사용)한 경우에는 기보가 보증회수, 보증중단, 사전구상, 고소 고발 조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의 투명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보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② 주주현황, 경영진변동은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역, 결산재무제표는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기보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 이 사건 각 이 사건 각 투명경영약정 제5조에 따라 B이 2016. 6. 20. 작성한 자금집행계획서 상 자금용도는 ‘인건비, 소요금액 : 1억 원’이고, 2017. 6. 22. 작성한 자금집행계획서 상 자금용도는 ‘자금용도 : 인건비 및 재료비 외, 소요금액 : 6억 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위 계약서상 임대인은 F,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세는 1,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9. 6.경 F에게 전화로 확인할 당시 F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계좌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 100,000,000원이 실행된 2016. 7. 4. 이후 2016. 7. 21. 23,000,000원이 B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 600,000,000원이 실행된 2017. 6. 28. 이후 같은 날 B에게 3,000,000원, 2017. 6. 30. G에게 50,000,000원, H에게 14,000,000원, B에게 51,000,000원이 각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B의 동생인 피고 A에게 2017. 7. 21. 19,734,000원, 2017. 9. 29. 21,12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바. 그밖에도 위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B의 개인 지방세 등이 납부된 적이 있고, 소외 회사는 2018. 8.부터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를, 2018. 7.경부터 사업장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 B와 B의 모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7. 16. 각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부동산에 관한 B의 지분을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8. 8. 31.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해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0. 18. 피고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B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1억 6,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신하고, 보증금 1,05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잔금 1억 8,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8. 10. 17. B에게 1억 8,3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같은 날 소외 회사로 5,000만 원, J에게 6,700만원, I에게 6,650만 원 등이 송금이체되었다. J은 위 돈을 송금받은 후 2018. 10. 18.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중소기업은행 원천동지점은 원고에게 위 대출에 관하여 2019. 6. 8.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원천동지점에 대출원리금 합계 627,305,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투명경영약정을 하면서, 허위자료제출 금지, 회계처리의 준수, 자금유용의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자금용도 외에 사용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B의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투명경영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31.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 및 B은 2018. 7.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투명경영약정을 위반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목록]

1. [토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 259.9㎡

- 의 지분 2분의1

2. [건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주택, 차고

1층(주택,차고) 116.57㎡

2층(주택) 88.04㎡

지하(대피소, 창고, 보일러실) 98.07㎡

1층 내역 : 주택100.07 차고 16.50

지하내역 : 대피소42.00 창고 38.25 보일러실 17.82

- 의 지분 2분의 1

